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난안전의무보험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 및 공제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의무자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제·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189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험계약 체결 거부 사유 등 신설(안 제32조의2 신설)

보험회사등이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에 대한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계약 등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항공사업법」에 따라 사업정지, 천재지변 등으로 가입대상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으로 정함

나. 보험회사 등의 보험계약 체결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11 제2호 개정)

보험회사 등이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에 대한 계약 체결 거부, 보험계약 해제·해지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에 따른 이행력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보험계약 체결의 거부) 법 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기대여업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가 법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및 제51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에 따른 사업정지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험회사가 해당 배상보험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
3. 「상법」 제650조제1항·제2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른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11 제2호머목과 버목을 각각 버목과 서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제70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	법 제84조제2항제23호	150	300	500
--	---------------	-----	-----	-----

해지한 경우				
--------	--	--	--	--

별표 11 제2호버목(종전의 머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84조제2항23호”를 “법 제84조제2항24호”로 한다.

별표 11 제2호서목(종전의 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84조제2항24호”를 “법 제84조제2항25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2조의2(보험계약 체결의 거부)</u> <u>법 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u> <u>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u> <u>는 경우를 말한다.</u> <u>1.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u> <u>치를 사용하는 항공기대여업</u> <u>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u> <u>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가</u> <u>법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u> <u>및 제51조제7항에서 준용하는</u> <u>제40조에 따른 사업정지 또는</u> <u>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운영</u> <u>할 수 없게 된 경우</u> <u>2. 보험회사가 해당 배상보험을</u> <u>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u> <u>3. 「상법」 제650조제1항·제2</u> <u>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u> <u>는 제654조에 따른 계약 해지</u> <u>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연 락 처	(044) 201 - 4227